# 수상레저보험 상품요약서

## 1.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

### □ 가입대상

- 『수상레저안전법』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

- 상해사망 담보는 만15세 이상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### □ 상품의 특이사항

- 이 상품의 보험기간(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)은 통상 1년이며,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.

-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.

## 2. 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

### □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

| 보장명 | | 보험금 지급사유 |
|---|---|---|
| 기본계약 | 배상책임조항(의무보험) - 수상레저사업자용 | 수상레저기구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(조종자, 탑승자 및 피견인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합니다)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그로 인하여 장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에 또는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|
| 기본계약 | 배상책임조항(의무보험) - 수상레저 개인소유자용 | 수상레저기구의 소유, 사용, 관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그로 인하여 장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에 또는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|

| | | |
|---|---|---|
| 기본계약 | 수상레저기구손해 |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가 보험기간 중에 침몰, 좌초, 충돌, 화재, 폭발, 도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<br>(수상레저기구에 장착된 표준기기, 장비품 포함. 단 연료, 식료품, 기타 소모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) |
| 기본계약 | 수상레저활동중 상해 | 보험기간중 수상레저활동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입은 손해 |

## □ 지급보험금 산정방식

### ㅇ 배상책임보험금

-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. 자기부담금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.
-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각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경우 이 계약에 따른 보상액은 각각의 책임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### ㅇ 수상레저기구손해보험금

-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.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.
-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합니다.
  ⇒ 손해액×보험가입금액/보험가액 - 자기부담금

### ㅇ 상해보험금

- 사망 보험금 :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.
- 후유장해보험금 :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.

□ 보험금 지급제한사항

-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-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3.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예시

### □ 보험료의 구성

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.

### □ 회사가 대표적으로 정하는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 예시

- 보험기간 : 1년
- 목적물 : 개인 소유자용 모터보트(동력) 1대, 4인승 이하

| 보장명 | | 보험가입금액(원) | 자기부담금(원) |
|---|---|---|---|
| 배상책임 | 대인 | 150,000,000 | 100,000 |
| | 대물 | 2,000,000 | 100,000 |
| 수상레저기구손해 | | 1,000,000 | 100,000 |
| **영업보험료 計** | | | **94,600원** |

※ 상기보험료는 요율변동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4.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

### 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

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,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

### 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

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(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)로

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. 다만, 계약자,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
**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**
**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**